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20

발의연월일: 2021. 11. 25.

발 의 자:전재수·김정호·박상혁

임종성 • 인재근 • 김성환

신영대 · 고영인 · 유정주

이광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중 자사에서 거래되거나 1개 업종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한 원인으로 업종 구분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고, 자사 또는 1개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규모나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총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·감독이 요청됨.

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 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4호 가목·나 목 삭제 및 제28조제3항제1호나목). 법률 제 호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발행된"을 "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"으로, "정보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"을 "정보를"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.

제28조제3항제1호나목 중 "경우"를 "경우. 다만,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라 함	14
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	
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	
<u>발행된</u> 증표 또는 그 증표에	-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
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	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
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	수 있도록 발행된
다. 다만, 전자화폐를 제외한	<u>정보를</u>
다.	-,
	<u>.</u>
가. 발행인(대통령령이 정하	<u><</u> 삭 제>
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	
다) 외의 제3자로부터 재	
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	
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	
<u>용될 것</u>	
나.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	<u><삭 제></u>
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	
종(「통계법」 제22조제1	
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	
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	

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 이상일 것

15. ~ 22. (생략)

제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 제록) ①·② (생략)

-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 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 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. (생 략)
 - 나.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
다. (생 략)

- 2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15. ~ 22. (현행과 같음)
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
록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3
1
기 / 원 체 기 기 이
가. (현행과 같음)
나
<u> </u>
우. 다만, 총발행액이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
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
<u>다.</u>
다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